

의안번호	2219662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6.7.21.
추 계 번호	26B3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1조의 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u>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1조의 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음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험료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월 보수액²⁾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가입자 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83조의5는 노무제공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가입자 수는 149만명임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수	763	805	1,194	1,438	1,490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현행법의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 중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에 변화할 노무제공자의 규모와 이들의 소득 수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하여 각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³⁾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등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7호)에 고시되어 있다.

3) 2026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에 고시되어 있다.

-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새롭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편입될 노무제 공자의 범위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